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18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
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
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중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학자
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
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2021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
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(참조 :
청소행정과, ☎ 02-3396-5454 FAX : 02-3396-8754

E-mail : pye5190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

[붙임 1-1]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제3항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